

용인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## 용 인 시 의 회 의 장

2022년 4월 27일

용인시의회 규칙 제42호

###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

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증표”를 “신분증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의원”을 “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용인시의회 의원”을 “의원”으로, “증표”를 “신분증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신분증에는 발급대상 식별 및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전자정부법」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「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의한 신분증 발급대장”을 “따른 “신분증 발급대장””으로 하고, 같

은 조 제2항 중 “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”을 “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분실 또는 파손되거나”를 “분실, 파손 또는”으로, “재발급 받고자”를 “재발급을 받고자”로, “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”를 “다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신분증 등”을 “신분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신분증 발급대장”을 “신분증 발급대장”으로, “기재”를 “기재하고 파기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입 안 자
의회운영위원회	김운봉 의원
	이미진 의원
	김희영 의원
	윤재영 의원
	전자영 의원
	하연자 의원
	황재욱 의원

[별표]

## 신 분 증

(전 면)

(후 면)



1. 사진의 규격 등
  - 가. 사진창(가로×세로 = 24×30mm)
  - 나. 사진인쇄(전면) : 칼라전사
  - 다. 신상정보(전·후면) : 먹 전사
2. 원단은 아이에스오(ISO) 규격의 피브이씨(PVC) 카드로 한다.
  - 가. 규격(가로×세로×두께 = 54×85.6×0.8mm)
3. 발급번호는 발급 년도에 일련번호 순으로 한다.
4.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가. 바탕 : 흰색
  - 나. 모양 : 청색, 하늘색
  - 다. 의회회장 배경바탕 : 금색(또는 백색)
5.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.
6.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정장 상의에 매달 수 있게 한다.

# 용인시의회의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

## □ 개정이유

-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의회마크에 맞춰 신분증을 변경하고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## □ 주요내용

- 신분증 변경(안 별표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